

제 호

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위치:

「평생교육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부장관 직인